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태년 · 이기헌 · 박희승

김원이 · 허성무 · 최기상

김성원 • 민형배 • 권칠승

김영배·백혜련·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조원"을 "40조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제5조(자본금) ①
자본금은 <u>30조원</u> 이내에서 정	<u>40조원</u>
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